

문화헌장 제정과 실현을 위한 토론회
"문화헌장과 한국사회"

-
- 일 시 : 2006. 4. 19(수) 14:00 ~ 18:00
 - 장 소 : 만해NGO교육센터
 - 주 최 : 문화헌장제정위원회
 - 주 관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프로그램

- 13:30~14:00 ○ 등 록
- 14:00~14:05 ○ 국민의례
- 14:05~14:10 ○ 개 회 사
- 도정일(문화헌장제정위원회 위원장)
- 14:10~14:15 ○ 인 사 말
- 송재호(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원장)
- 14:15~14:20 ○ 격 려 사
- 이미경(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
- 14:20~15:20 ○ 세션 I
- 사회자: 이해경(문화헌장제정위원회 위원)
- 발제자: 노명우(문화헌장제정위원회 실무위원)
 도정일(문화헌장제정위원회 위원장)
 지금중(문화헌장제정위원회 위원)
- 15:20~15:40 ○ 휴게시간
- 15:40~17:00 ○ 세션 II
- 사회자: 김승환(문화헌장제정위원회 소위원장)
- 토론자: 김기봉(지역문화네트워크 상임대표)
 김세훈(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예술정책연구실장)
 남송우(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박인배(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기획실장)
 윤용중(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
 이성원(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장)
 이수자(여성문화이론연구소 대표)
 허 권(문화헌장제정위원회 위원)
 홍윤기(동국대학교 철학과 교수)
- 17:00~18:00 ○ 종합토론
- 18:00 ○ 폐 회

문화헌장

문화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의 기초이다. 문화는 시민 개개인이 삶의 다양한 목표와 염원들을 실현해나갈 자유로운 활동의 터전이고 공동체를 묶어주는 공감과 정체성의 바탕이며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 의미, 아름다움의 원천이다. 우리가 전통의 가장 좋은 부분들을 이어받고 보존과 혁신, 성찰과 희망을 결합하여 사람의 사회를 열어 갈 창조적 동력은 문화로부터 나온다. 인간의 품위와 생명의 존엄이 모든 가치의 중심에 놓이고 사람들의 삶이 높은 성취와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성숙한 문화사회가 사람의 사회이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누려야 할 문화적 권리들을 확인하고 공동체의 초석이 될 문화적 가치들을 찾아내며 사회발전의 문화적 원칙들을 천명하여 인간다운 삶의 토대를 다지 고자 2006년 5월 이 헌장을 공표한다.

1. (기본권리) 문화적 권리는 시민의 기본 권리이다. 모든 시민은 부당한 검열, 감시, 위협에 시달리지 않을 권리, 양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을 권리,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권리, 이 땅 어디에서나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갖는다.

2. (창조, 참여, 향유의 평등한 권리) 문화적 권리는 시민의 평등한 권리이다. 모든 시민은 계층, 지역, 성별, 학벌, 신체조건, 소속 집단, 종교, 인종 기타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받음이 없이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시민은 삶의 질을 높일 창조적 문화 환경과 여가를 누릴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평생학습을 추구하여 스스로 기회를 창출할 권리, 모든 분야의 지식정보와 전달매체에 평등하게 접근하고 자유로운 표현수단을 가질 권리, 자신의 문화적 삶에 영향을 주는 공공정책의 결정과 그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3. (공동체의 문화적 토대) 사회공동체는 더불어 사는 삶의 토대가 될 문화적 가치들을 늘 확인하고 존중해야 한다. 공동체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문화적 가치들에는 사람과 생명의 존중, 평화애호, 이웃에 대한 배려와 선의, 공정성과 관용, 자연과의 상생이 포함된다. 아름답고 선한 것의 존중, 공적 가치의 옹호, 역사적 기억과 경험의 공유, 옳고 그름에 대한 이성적 판단과 같은 가치들도 공동체를 묶어줄 시민적 덕목의 원천이고 신뢰, 협력, 유대의 기초이다.

4. (다양성의 원칙) 문화다양성은 개인의 정체성과 집단적 자주성의 토대이고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다원성의 원리이며 평화와 공존의 기틀이다. 시민은 자유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의미를 생산하고 가치를 표현하며 다른 문화의 차이들을 존중하여 나라 안팎의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5. (약자와 소수자의 문화권) 여성,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노약자, 혼혈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집단의 문화적 권리는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외국인, 이주민, 이주노동자도 이 땅 어디에서나 시민과 동등한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성적 소수자를 포함하여 언어적, 종교적, 민족적 소수자와 소수집단은 자기 고유의 문화유산과 문화적 정체성을 지킬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순응을 강요받지 않는다.

6. (문화유산 보존의 원칙) 민족의 경험과 염원이 담긴 유무형의 문화유산과 역사 유적들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이의 공유 자산임과 동시에 훼손할 수 없는 인류문화유산의 일부이다. 문화유산들은 아름답게 보존되어 새로운 창조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문화적으로 중요한 자연환경도 넓은 의미의 문화유산에 포함된다.

7. (지역문화 창달의 원칙) 지역문화는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지역공동체를 지탱하는 정체성과 활력의 원천이다. 지역문화를 가꾸어 나가는 일은 주민의 자주적 참여와 자치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 지역 주민은 자기 고장의 언어, 민속, 전통 같은 고유의 표현형식들을 포함한 자생적 문화자원들을 보존하고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8. (예술과 학문의 자유 원칙) 예술과 학문은 창조와 혁신의 원천이며 사회의 지적, 감성적, 윤리적 능력의 토대이다. 시민은 누구나 그 능력과 재능에 따라 예술 창조와 학문 활동에 참여하고 자신이 이룩한 창조적 성과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 예술과 학문은 과도한 상업주의와 이념적 독선의 폐해로부터 보호되고 표현, 사상, 탐구의 적극적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모든 시민은 예술과 과학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9. (민주주의의 문화적 토대) 민주사회를 튼튼히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데는 민주주의의 원칙, 가치, 태도를 존중하고 함양하는 문화적 토양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정치, 경제, 사회를 비롯한 시민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고 발전할 수 있는 문화적 토대를 힘써 다져나가야 하며, 주요 국가 정책에서 민주주의 문화의 기초를 항상 유지해야 한다.
10. (경제발전의 문화적 토대) 문화는 경제발전을 이끄는 강력한 요소이며 사회발전과 번영의 궁극적 목표이다. 경제발전과 번영은 인간다운 삶의 실현이라는 문화적 목표에 따라 안내되고 그 목표로부터 발전의 지속적 동력을 얻어야 한다.
11. (문화산업의 균형 원칙) 문화산업은 산업 활동임과 동시에 시민의 정신생활과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는 문화적 활동이다. 문화산업은 시장논리와 문화적 가치 사이의 균형 속에서 인간 발전을 돕고 국제 평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의 문화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시장경쟁력의 열세에 놓인 문화산업 분야들이나 시장에만 맡길 수 없는 예외적 분야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회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12. (국가의 책무)

(가) 문화권리 보장의 책무-국가는 이 헌장에 천명된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세우고 실시할 의무가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공의 문화기반시설을 부단히 확충하고 봉사체제를 강화하며, 문화적 관점에서 시민의 생활환경과 활동 공간을 개선하고 법률과 제도에도 늘 문화의 관점을 도입해야 한다.

(나) 문화 활동 지원의 책무-시민의 문화적 능력은 그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능력의 기초이며 행복의 기반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시민 개개인과 민간단체들이 전개하고자 하는 교육, 능력개발, 창작 기타의 문화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다) 제휴협력의 원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시민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민간의 창의적 제안을 환영하고 존중하며, 문화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할 때에는 시민사회 민간단체들과의 제휴협력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13. (실행의 약속)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헌장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책적, 재정적 조치와 그 밖의 구체적이고 유효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실행해야 한다. 시민사회와 시장의 영역도 이 헌장이 천명하는 문화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

문화적 권리보장과 문화헌장 제정

노명우

문화헌장제정위원회 실무위원

목차

-
1. 문화적권리, 문화적 발전과 인간의 권리

 2. 문화적권리 실현을 위한 국민/민족국가 모델로서의 문화헌장 제정

 3. 문화헌장 제정과 한국사회의 문화적 발전

 4. '문화헌장'의 현실화를 위한 과제

1. 문화적 권리, 문화적 발전과 인간의 권리

1.1 문화적 권리 옹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우리에게 문화적 권리(cultural rights)라는 개념은 낯설게 느껴지지만, 이 개념은 유엔이 1948년 12월 10일 제정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서 이미 사용되기 시작한 오래된 개념이다. 문화적 권리 개념과 관련하여 1948년의 유엔 '세계인권선언'은 그동안 부가적인 것, 잉여적인 것으로 취급받아왔던 문화에 대한 권리를 인간의 기본 인권 중의 한 형태로 파악하여 인권 개념을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출발점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제22조에서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국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고 천명하면서 문화적 권리가 경제적 권리 및 사회적 권리와 더불어 인간의 기본인권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문화적 권리 개념은 이후 1966년 12월 16일 유엔에서 채택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보다 구체화된다. '세계인권선언'과 달리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15조에서 문화적 권리 개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서 인간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자기가 저작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 규약은 인류가 정치적 권리 보호에 집중하는 인권운동의 1단계에서, 사회권을 보장하는 인권의 2단계 개념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인권의 목표가 문화적 권리의 보장임을 천명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선언이다.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후 문화적 권리 옹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1969년의 ‘미주인권선언’¹⁾, 1976년에 유엔에서 채택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²⁾과 1981년에 채택된 ‘인간과 인민 권리를 위한 아프리카 헌장(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 Rights)’³⁾에서도 나타난다.

유네스코(UNESCO)는 문화적 권리 개념의 확산과 구체화와 관련하여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들을 수행하였다. 1966년 파리에서 개최된 유

1) ‘미주인권선언’ 3장 26조 참조.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함을 인정하며,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시민적, 정치적 자유 및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자유인간의 이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뿐만 아니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에만 성취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촉진시킬 국제연합 헌장상의 국가의 의무를 고려하며, 타 개인과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는 개인은,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증진과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 다음의 조문들에 합의한다.”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는 보편성에서는 물론 개념에 있어서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로부터 분리될 수 없으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충족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의 향유를 보장한다는 것을 확신하며; 인민들이 아직도 자신의 존엄성과 진정한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으며, 식민주의, 신식민주의, 인종차별정책, 시온주의를 철폐시키고 침략적인 외국군사기지와 모든 형태의 차별, 특히 인종, 민족집단,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는 아프리카인의 완전한 해방을 달성할 의무를 인식하며; 아프리카단결기구, 비동맹국가운동, 국제연합에서 채택된 선언, 협약 및 기타문서들에 포함된 인간과 인민의 권리 및 자유의 원칙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며; 아프리카에서 인간과 인민의 권리와 자유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부여되었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이러한 권리와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할 의무를 굳게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네스코 14차 총회에서 ‘국제문화협력의 원칙에 관한 선언’ 이 발표된 이후, 1968년에 개최된 ‘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에 관한 전문가 회의는 ‘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이 성명은 노동권, 여가권, 사회보장권에 이어 문화적 권리가 인류가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권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또한 2001년 ‘문화다양성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에서 문화적 권리는 인권을 구성하는 핵심적 개념임을 지적하면서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제기된 문화적 권리의 기본 정신을 수용하고 있다.⁴⁾

1.2 문화적 권리의 실현과 문화적 발전

여러 국제규약과 선언에서 문화적 권리가 인권의 구성요소임이 천명되고 난 이후 문화적 권리를 이론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 또한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린델 프로트(Lyndel Prott)⁵⁾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노력을 수용하여 문화적 권리를 문화에 대한 향유권이라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 대중의 보편적 권리로 해석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프로트에 따르면 문화적 권리는 “문화유산이나 구체적인 사람들의 문화정체성, 문화발전을 보존하는 데 사용되는 것만이 아니라 대중들 모두의 권리”이다. 프

4) “문화권(문화적 권리)은 인권을 구성하는 데 빠질 수 없으며, 보편적이고 개인적이며 상호 의존적인 요소이다. 창의적 다양성이 번성하려면 ‘세계인권선언’ 27조와 ‘경제사회 문화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제13조 및 14조에 명시된 문화권(문화적 권리)을 완전하게 실천해야 한다. 모든 이는 자신이 선택한 언어로 특히 모국어로 자기작품을 창조하고 배포할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문화 다양성을 전적으로 존중하게끔 질 좋은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또 인권과 기본 자유를 존중하면서 그 바탕 위에 자신이 선택한 문화적 생활에 참여하고, 문화적 실천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

5) Lyndel Prott, "Understanding one another on cultural rights", in *Cultural Rights and Wrong*, eds by Halina Niec et al., Unesco Publishing, 1998.

로트는 문화적 권리는 문화예술인의 권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하는 기본 인권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가즈코는 문화적 권리는 자유권이자, 사회권이며 환경권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⁶⁾ 가즈코에 따르면 자유권 개념의 문화적 권리는 자유롭고 억압이 없는 표현 속에서 발전될 수 있다는 개념으로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자유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는 표현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해당되는 권리이다. 또한 사회권 개념의 문화적 권리는 인간다운 생존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세계인권선언 22조의 “자신이 존엄과 자기 인격의 자유로운 발달에 필수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사회권 개념의 문화적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필수 생존을 경제적 의미에 국한시키지 않고, 인간다운 존엄을 확보하기 위한 권리는 문화적 권리로 완성됨을 주장하고 있다. 환경권 개념의 문화적 권리는 모든 사람은 좋은 문화 환경을 향유할 권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가장 확장된 개념의 문화적 권리이다.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소득의 보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보통 빈곤은 경제적 빈곤으로만 이해되지만, 빈곤한 문화 환경은 개인의 정신건강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신적 여유를 앗아가 내면적 생활을 저해한다. 파괴된 생태환경 속에서 인간이 생물학적 존속이 위협받는다면, 파괴된 문화 환경은 인간의 인간학적 존속을 위협하는 위험한 환경이기 때문이다.

문화적 권리 개념은 전통적으로 해석되어 온 장르적 개념의 문화 개념으로는 그 의미를 제대로 해석할 수 없다. 문화적 권리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화 개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전제로 한다. 문화의 개념

6) 고토 가즈코, 임상오 옮김, 문화정책학, 시유사, 2004, 121-127.

은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며, 문화 개념이 포괄하는 영역역시 문화개념을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서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협의의 문화 개념에 따르면 문화의 영역은 장르적 의미로 국한된다. 이 경우 문화와 관련 있는 집단은 직업적 범주로서의 문화예술인에 한정된다. 하지만 문화적 권리는 협의의 문화 개념이 아니라 광의의 문화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문화적 권리 개념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광의의 문화개념 중 대표적인 사례가 유네스코(UNESCO)가 사용하는 문화개념이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문화는 “어떤 사회나 집단의 성격을 나타내는 독특한 영적, 물질적, 지적, 정서적 특성들의 총체적인 복합체”이다. 유네스코의 정의를 따를 경우 문화영역은 “예술과 문자뿐만 아니라 삶의 양식, 인간의 기본권, 가치체계, 전통, 믿음을 포함”한다.

광의로 정의된 문화는 사회의 한 영역일 뿐만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원리이다. 우리가 문화를 광의로 정의하게 되면 문화는 영역이자 삶을 관통하는 경제와 구별되는 독특한 원리이다. 문화의 이러한 측면을 우리는 ‘원리로서의 문화’라 정의할 수 있다.

원리로서의 문화 개념에 따르면 문화는 인간의 창의성(Creativity)이 발휘되는 인간의 역능을 의미한다. 또한 원리로서의 문화는 경제중심주의적 세계관, 노동중심주의적 세계관, 경쟁주의적 세계관이 아니라 인간주의적 세계관을 지지한다. 경제주의적 세계관은 경쟁과 효율성을 강조하지만 ‘원리로서의 문화’는 상생의 논리, 제압보다는 설득, 효율보다는 공감을 존중한다. 그렇기에 ‘원리로서의 문화’가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는 인간 사이의 공동선(The Public Good)의 창출이다. 창의성을 기본원리로 하면서 공동선 달성을 목표로 하는 ‘원리로서의 문화’는 문화영역을 관통하는 주된 논리이면서 동시에 문화 이외의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

치체계이다.

문화적 권리 개념은 ‘원리로서의 문화’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원리로서의 문화’는 이해, 공감, 소통, 상생의 공동선을 중시하는 문화적 관점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한 문화적 진단이자 문화적 처방을 의미한다. 따라서 ‘원리로서의 문화’가 관통되는 영역은 좁은 의미의 문화정책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회발전 전략, 국정운영의 기본원리까지 포괄한다. 문화적 관점이 도입된 국가의 발전전략은 획일화보다는 다원주의를 존중하며, 국정의 모든 분야의 성과를 측정하는 기본 기준으로 경제적 경쟁력뿐만 아니라 창의성의 제고를 제시하며, 소통을 증대시켜 민주주의의 확산에 기여하며, 모든 인간들이 사회 속에서 자신의 창의성과 능동성을 아무런 제한 없이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문화를 원리로서 이해하게 되면 발전 또한 새롭게 해석될 수 있다. 흔히 발전은 경제적 성장, 즉 생산과 생산성의 향상, GDP의 증대와 같은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경제주의적 발전개념과 달리 UNDP의 인간발전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는 발전이란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자유가 향상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경제주의적 발전개념과 구별되는 이러한 발전 개념은 발전을 경제성장을 포함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경제주의적으로 발전을 해석하지 않고, 발전을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의미에서 조망할 때 문화와 발전의 관계는 새롭게 정의된다. 경제주의적 발전개념에 따르면 문화는 발전을 위한 ‘도구’이지만, 새로운 발전개념에 따르면 문화는 발전의 ‘도구’가 아니라 발전의 의미를 규명하는 발전의 ‘목적’이다. 이러한 새로운 발전전망은 문화적 발전이라 정의할 수 있다.

문화의 발전(development of culture)은 좁은 의미의 장르적 개념의 문화 발전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문화적 발전(cultural development)은 경제주의적 발전전망과는 달리 삶의 질 향상, 사회구성원의 의미충족을 목표로 삼는 새로운 발전전망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화적 발전은 문화관광부의 정책영역이나 정책목표로 국한되지 않는 전체 국가발전의 정책영역이자 목표이다. 문화의 발전이 아니라 문화적 발전을 지향함을 문화적 관점이라 명명 할 수 있다. 문화적 관점은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서 '경쟁'보다는 상호이해와 소통을 중요시하는 비패권주의적 외교관계를 지지하며, 자연을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봉사해야 하는 도구주의적 관점과는 달리 자연과 인간의 소통을 지향하는 생태주의적 관계를 지지한다.

2. 문화적 권리 실현을 위한 국민/민족국가 모델로서의 문화헌장 제정

문화적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 협약과 선언은 많지만, 국가단위에서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문서는 발표된 적 없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문화헌장'은 국가단위에서 문화적 권리 보장에 관한 세계 최초의 국간 단위의 공식문서라는 의미를 지닌다. 유엔과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는 문화적 권리를 존중하고 문화적 권리를 기본인권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유네스코 등이 제시하는 문화적 권리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과 강제력이 없을 뿐 아니라, 지역적 특수성이 매개되지 않은 추상적인 보편성의 원리 선언에 불과하다. 유네스코가 제시하는 추상적 보편성은 지역적 맥락에 따라 구체적 보편성으로 승화되어야 한다. 문화헌장은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추상적 보편성을 한국이라는 국민/

민족국가(nation-state)의 맥락에서 구체화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국민/민족국가는 분명 근대의 산물이며, 국민/민족국가는 근대의 발명품인 국민/민족 개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민족 국가 개념에 근대적 이데올로기가 투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문화적 권리의 구체적 보장을 위해서는 국제적 규약과 선언이 깃대고 있는 추상적 보편성은 구체화되어야 한다. 국제사회의 추상적 보편성이 구체적 보편성으로 전환되는 공간은 국민/민족국가이다. 근대 사회에서 국민/민족국가의 국경은 정치적 경계이자 문화적 경계로 작동한다. 국경을 통해 정치적 경계가 문화적 경계와 일치되고 있는 근대의 조건 속에서 국민/민족국가의 현실적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추상적인 문화보편주의는 물질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국민/민족국가의 단위를 넘어선 세계정부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 국제사회의 선언과 협정이 국민/민족국가 단위에서 강제력을 지닌 법률로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문화적 권리 개념은 수사학적 선언에 그쳐버릴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문화적 권리 선언이 수사학적인 선언에서 문화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선언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민족국가의 틀을 활용한 현실화가 필요하다. '문화현장'은 국민/민족국가가 문화의 경계를 확정하는 유일한 공간적 기준임을 고집하지도 않지만, 동시에 제국적 문화보편주의에 대한 방어논리로써 제한적으로 민족국가 단위에서의 문화적 권리의 보장과 문화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정책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3. 문화현장 제정과 한국사회의 문화적 발전

한국이 처한 문화정책의 역사적 맥락은 매우 복잡적이며, 따라서 한국

의 문화정책의 방향 역시 복합적인 역사적 맥락에 따라 매우 독특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광복 60년 동안 한국의 문화정책을 반성적으로 회고할 때 한국의 문화정책이 해결해야 하는 부정적 양상은 매우 많다. 첫째 1945년 이후 한국의 문화정책은 무정책이 정책이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한국의 문화정책은 체계성 없는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다. 둘째 한국에서 문화정책이라는 개념은 권위주의적 국가의 통제를 자동적으로 연상시킬 만큼 강력하게 국가주의적 틀에 의해 규정되어 왔다. 셋째 한국의 문화정책은 중앙의 통제정책이었고, 문화정책 수립시 '지역' 개념은 부재했다. 넷째 한국의 문화정책은 "5천년의 역사를 지닌 유구한 단일민족"의 신화를 구축하기 위한 이데올로기 공급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민족국가의 형성과정에서 민족국가 내부에 거주하는 국민들에게 집합적 문화 정체성 부여는 근대국가의 중요한 과제였다. 그것기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민족국가의 형성기에는 표준화된 국어의 보급, 공동의 역사적 기억 교육, 표준화된 교육 내용을 통해 집합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 문화정책의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한국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한국의 문화정책은 해방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분단이라는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민족 집합 정체성 부여에 주력해왔다. 한국의 문화정책은 타문화와의 대화와 개방을 통한 문화 다원성의 증대보다는 문화적 동일성 유지를 제일의 정책 목표로 삼는 폐쇄적인 민족주의적 유산을 강조하기 위한 국가정책으로서의 성격이 매우 강했다.

『창의한국: 21세기 새로운 문화의 비전』은 한국의 문화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다. 창의한국은 문화적 권리와 문화적 발전과 같은 새로운 발전전망을 모색하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노력을 수용하면서 한국 문화정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중요한 계기이다. 『창의한국』은 유네스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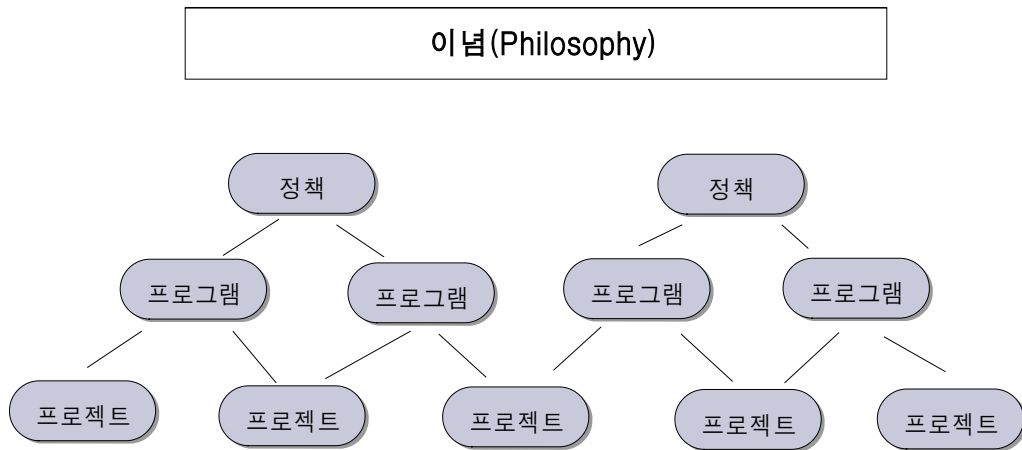
가 정의하는 광의의 문화를 수용하여 문화를 예술이나 문화유산 등과 같은 특수한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문화의 개념을 주장하고 있다. 협의의 문화 개념을 사용하는가, 광의의 문화 개념을 사용하는가의 문제는 단순한 정의상의 차이처럼 보이지만, 협의의 문화개념을 사용하는가 광의의 문화개념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한 국가 문화정책의 목표와 대상영역은 분명하게 구별된다.

협의의 문화개념을 사용할 경우 문화정책이 포괄하는 정책 대상은 좁은 의미의 문화예술진흥과 문화예술인 보호로 귀착되지만, 광의의 문화개념을 사용할 경우 문화정책은 문화예술진흥을 포함하여 문화적 삶을 대상영역으로 삼게 된다. 문화예술인과 문예중흥만을 목표로 삼는 문화정책은 그 동안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점점 낡은 것이 되어가고 있다. 문화관광부가 좁은 의미의 문화개념에만 충실한 경우, 문화관광부는 '문화예술인'이라는 특별한 집단만을 위해 기능하는 부처로 전략하고 말며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게 된다. 게다가 한국의 문화관광부처럼 문화예술영역뿐만 아니라 관광, 스포츠까지 포괄하고 있는 광범위한 관할영역을 지니고 있는 부처는 좁은 의미의 문화개념을 고집할 경우 자기모순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창의한국』이 유네스코가 제시하는 광의의 문화개념을 수용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광의의 문화개념을 수용하면서 나타난 긍정적인 가능성은 두 가지이다. 첫째로 문화관광부는 광의의 문화개념을 수용하면서 문화예술, 관광, 스포츠, 종교 등 문화관광부의 광범위한 관할영역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로 협의의 개념과 달리 광의의 문화개념을 수용하게 되면 문화정책의 대상과 영역은 특수한 집단으로서의 문화예술인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시민의 문화적 삶을 대상영역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문화정책의 서열은 문화정책의 이념을 제시하는 철학-정책(policy)-프로그램-사업(project)으로 구성되는데, 한국의 문화정책은 지금까지 프로그램과 사업 개발에 목표를 두었을 뿐 프로그램과 사업 개발을 뒷받침하는 철학은 부재했다. 『창의한국』은 문화정책의 위계구조에 따라 판단할 때, 정책과 프로그램의 제시라는 의미를 지닌다면 문화헌장은 정책과 프로그램을 포괄하는 '철학'의 성격을 지닌다. '문화헌장'은 한국의 문화정책이 추구하는 정책의 지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최고 수준의 '철학' 제시라는 위상을 지닌다. 체계화된 문화정책이란 정책(policy)의 목표와 근거를 제시하는 '철학'을 필요로 한다. 광복 60년 이후 한국의 문화정책이 무정책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근거역시, 한국의 문화정책은 '철학'없이 그때그때의 편이적인 목표에 따른 사업에 나열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림 1> 문화정책의 서열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적 발전의 전망을 모색하는 '문화헌장'은 한국의 문화정책이 지향해야 하는 기본 목표와 방향을 문화예술의 발전

전략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적 관점에 바탕을 둔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을 추구한다는 이중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발전전략의 모색이 '문화현장'을 이끌어가는 기본 정신이라 할 수 있다. '문화현장'은 체계 없는 문화정책의 기본 골간이 되는 문화정책의 철학을 수립하는 과정이며, 동시에 문화통제라는 과거의 권위주의적 국가의 유산을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시민사회의 사회협약을 통해 극복하려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 문화현장이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국가주의적 문화통제(policing culture)가 아닌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정책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는 기본인권이자 보편적 인권에 속하기에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를 옹호하는 문화정책은 중앙부처의 기능적 전문화에 따른 특별한 부처(문화관광부)의 정책이면서 동시에 문화영역을 담당하는 한 부처의 영역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정부의 각 부처가 추진하는 공공정책의 수혜집단은 상이하다.

문화적 권리의 실현 및 문화정책에 있어서는 국민의 정신·문화적 가치에 연관된 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이에 관한 행정적 판단 내지는 결정이 행해질 경우에 일반의 행정과제와 같이 일방적으로 판단 결정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문화적 사항의 정책결정과정에는 국민 주민의 의사와 이익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위원을 그것에 관한 심의에 참여케 하는 등 문화전문가나 문화전문가단체의 판단 의견이 중시되는 구조를 제도화하거나 또는 법해석에 있어서 조리원칙으로서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문화현장'은 국가가 만들어 국민에게 강요하는 국가주의적 현장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제안하고 정부가 수용하는 형식의 아래로부터의 현장이

며, 시민의 문화적 권리와 국가의 책무를 주 내용으로 한 시민문화권리 헌장이자, 시민사회의 요구를 국가가 수용하는 사회협약이다.

문화헌장과 문화헌장이 제시하는 철학에 근거한 문화정책의 주체는 시민이다. 국민이 국민/민족국가에 의해 호명되는 주체라면, 시민은 상향식으로 문화를 구성하는 능동적 주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런 측면에서 문화헌장은 문화정책의 딜레마를 극복하려는 노력이다. 문화정책의 체계화는 필요하지만 체계화된 문화정책이 강력한 국가주의와 결합하면, 문화정책은 문화행정으로 축소되고 개인들은 국가주의적 문화정책이 호명하는 주체로 전락할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반면 국가주의적 문화정책의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해 택할 수 있는 시장주의적 문화정책은 문화의 공공영역을 약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문화헌장은 국가주의적 위험성과 시장주의적 위험성을 극복하고 국가-시민사회-시장의 균형론적 시각을 제시한다. 문화헌장은 문화정책을 협치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입장이며, 궁극적으로 국가의 역할은 사적 문화생활영역에 대한 국가의 통제강화가 아니다. 문화헌장은 국가의 개입이라는 형식을 지니지만, 문화헌장의 정신은 국가권력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가 아니라 공공영역의 변화된 역할과 이 과정에서의 국가와 공공 영역의 새로운 관계 설정, 그리고 이를 통한 시민 사회의 강화라는 부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가장 폭 넓은 의미의 '시민사회(civil society)'는 시민사회는 자발적인 결사체들을 통해 새롭게 실현되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국가의 부당한 침입에 대한 방어책이다. 시민사회란 어떤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폭압에 대한 저항이라는 역할을 보존하기 위해서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는 동일한 이상들을 신념으로 삼고 있는 결사체들의 자기 규제

적인 집단을 의미한다. 건강한 시민사회란 구성원들이 공적 영역 내의 의사소통의 구조를 통해 구성원들이 민주적으로 구축한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의미를 기반으로 건설된다. 공유된 의미는 국가주의적 사회에서는 국가의 통치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나, 시민사회에는 국가가 강제하는 통치 이데올로기 이외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축하고 공유하는 의미가 있다. 이런 점에서 문화현장은 이중적인 성격을 지닌다. 한편으로 문화현장은 민족국가단위의 현장이지만, 문화현장은 국가의 통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오히려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구축한 의미를 존중한다. 그렇기에 문화현장은 문화의 의미를 시민사회를 결속시켜주는 공동체를 지탱하는 문화적 가치들에서 찾고 있다.

국가가 시민의 문화적 권리 보장을 책임진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문화적 권리가 보장되는 과정은 어디까지나 국가주의적 방식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 보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문화현장'은 천명하고 있다.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문화정책은 개인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화정책의 입안과 실행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시민의 문화적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시장 영역의 적극적인 협조와 책임이 요구된다. 지속가능한 인간 개발에 핵심인 문화 다양성의 증진과 보호를 시장 기능만으로는 보장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간 분야와 시민 사회와 협치를 통한 공공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국가는 독점적인 지위를 포기하고, 시민사회와의 협동을 통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추구하는 것이 협치이다. 협치는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협력이자, 국가의 위계질서에 의한 강제가 아닌 국가와 시민사회의 '수평적인 타협과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과정을 의미한다.

4. '문화헌장'의 현실화를 위한 과제

'문화헌장'은 한국의 새로운 발전 전망 수립과 문화정책의 전환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철학'을 제공하고 있지만, '문화헌장'은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적 발전을 모색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 '문화헌장'은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국민/민족국가 단위에서 구체화하고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수용된 결과이지만, '문화헌장'은 법률적 및 제도적 현실화를 피하지 못한다면 의미 있는 문서로 전락할 위험성 또한 있다. 문화적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1) 문화적 권리에 대한 선언과 (2) 문화적 권리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각종 법령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모두 필요하다. 현재 '문화헌장'은 문화적 권리 실현을 위한 첫 단계에 불과하다. 또한 '문화헌장'이 한국의 문화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이라는 소극적 의미를 벗어나, '문화헌장'이 제시하는 정신이 새로운 국가 전망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가야할 길은 더욱더 멀다.

'문화헌장'은 국제사회의 노력을 국민/민족 국가 단위에서 현실화했다는 측면에서 국제사회에서 바람직한 '모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가능성은 이론적 가능성일 뿐이다. 현재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문화헌장'에 담겨 있는 기본 철학은 시장주의적 논리에 의해 잠식당할 가능성이 더 크며, 그럴 경우 '문화헌장'은 듣기 좋은 말들의 성찬에 불과해질 수도 있다. 또한 설령 국가가 '문화헌장'의 정신을 수용하여 '문화헌장'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법령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시민사회와 국가의 사회협약이 아니라 국가주도로 이루어진다면 '문화헌장'의 정신은 퇴색될 수 있다. '문화헌장'은 자

애로운 아버지인 국가에게 보내는 청원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신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받고 문화적 발전 전망을 국가에게 요구하고 국가가 이를 수용하는 '협치'를 통한 '협약'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이제 '문화헌장'은 첫걸음을 시작했다. 첫걸음에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전진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시민사회'의 역량에 달려 있다.

문화현장의 취지와 주요 내용에 관한 설명

도 정 일

문화현장제정위원회 위원장

(1) 오늘 우리는 ‘문화헌장’ 공표에 앞서 이 헌장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공개리에 토론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헌장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제정해온 과거의 헌장들과는 달리, 시민사회가 주도하고 정부가 받아들여 공표하는 아주 새로운 형식과 절차에 따라 준비되었습니다. 과거의 헌장들이 ‘위로부터의 헌장’이었다면 이 문화헌장은 ‘밑으로부터의 헌장’입니다. 여기서 ‘밑으로부터의 헌장’이라는 표현은 국가가 ‘위’고 시민은 ‘밑’이라는 식의 비민주적 발상을 계승하는 말이 아니라 ‘시민이 만드는 헌장’이라는 의미입니다. 2년 반 전에 시민사회 문화단체들은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헌장의 제정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 “헌장 작성은 시민사회가, 공표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라는, 우리나라 헌장 제정사상 초유의 민주적 형식과 절차를 따르는 ‘시민의 문화헌장’ 제정 작업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시민사회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문화헌장제정위원회’가 헌장 작성의 책임을 맡았고 정부는 필요한 사무 지원 외에는 문안 작성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시민이 만드는 문화헌장은 가능한 한 많은 시민들과 시민사회 각계의 의견을 모으고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정위원회는 그동안 각계 원로들을 모신 자문회의 2회, 경향 각지 공청회 3회, 시민문화단체 대상 설명간담회 3회를 진행했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 토론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2) 시민사회 문화단체들이 정부에 문화헌장의 제정을 건의한 것은 세 가지 질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공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사

람은 누구도 닦치는 대로, 무턱대고 허둥지둥 살고자 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삶이 어떤 목표와 가치에 따라 유도되듯이 많은 사람이 모여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집단적 삶에도 어떤 목표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가”라는 질문은 그런 목표의 필요성을 지시하는 일종의 화살표 같은 것입니다. 집단의 삶을 맹목과 우연의 손에, 몰가치와 이해갈등의 극장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그 질문의 동기입니다. 사회와 국가는 같은 배를 탄 공동운명체이며 이 공동운명체는 자기가 탄 배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 그 방향을 함께 생각하고 함께 설정하는 항해도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가에 대한 그림이 없다면 어떤 사회도 이미 공동체가 아닙니다.

- (3)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인가?”라는 물음입니다. 지금처럼 온 사회 구성원들이 제 각각 각종의 이해관계로 충돌하고 사회가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지는 시대에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인가”라고 묻는 것은 해답 없는 질문의 제기 같아 보입니다. 사람들은 각각 생각과 의견이 다르고 목표와 가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만인이 동의할 ‘좋은 사회’의 그림을 그리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슨 보편이 아니라 누구도 애써 거부하거나 부정하지 않을 ‘최대 다수의 최대 동의’라면 그런 최대 동의를 그림 하나를 얻는 일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는 그림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도 이 그림만은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4) 세 번째 질문은 위의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런 사회를 만들자면 무엇이 필요한가?”--이것이 그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에는 시민 개개인, 사회,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라는 질문도 그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시민은 시민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가장 중요한 대목은 모든 시민이 사람답게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좋은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좋은 사회의 기본 조건, 환경, 토대는 무엇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시민이 좋은 사회에 살자면 그 사회는 어떤 조건과 원칙과 토대를 시민생활의 ‘기본’으로 확보해야 하는가, 그런 기본 조건들을 만들고 확보하기 위해 시민은 무엇을 보장 받아야 하고 어떤 가치들이 확인되어야 하며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 (5) 이번에 마련된 문화헌장이 과거의 국가 헌장들과 다른 독특한 성격을 갖는 것은 이런 질문들이 헌장 제정의 배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헌장이 공허한 미사여구의 나열을 거부하고 가능한 한 실체적 내용을 담기 위해 노력한 것도 그래서입니다. 제정위원회는 중학생이 읽어도 알만한 내용의 헌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환상은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종류의 문화헌장은 세계에서 만들어진 유례가 없기 때문에 국제적 논의의 기준과 수준을 충족시킬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헌장의 가장 현저한 특징은 국민을 상대로 한 훈도의 포기입니다. 과거의 헌장들이 국민의 의무와 책임을 제시하고 사명을 부과하여 국민을 훈도하는 데 치중했다면, 이

문화현장은 시민을 계도하거나 훈도하려는 목적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현장은 시민의 의무에 관한 현장이 아니라 권리에 관한 현장입니다. 이 현장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이가 사람답게 살자면 시민의 어떤 기본적인 권리가 인정되고 보장되어야 하는가, 어떤 원칙과 가치가 확인되고 정책 환경과 토대가 제공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 곧 '시민의 권리'를 천명합니다. 시민의 그런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제도를 만들고 실천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이 현장은 시민의 권리와 국가의 책무라는 두 개의 핵심 내용을 골격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 (6) 우리 사회는 이제 '사람을 생각하는 사회'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고 성숙해질 때가 되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럴만한 자격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경제발전과 물질적 복지가 필요하고 사람을 억누르지 않는 정치 민주주의가 필요하며 사회경제적 평등이 필요합니다. '발전'이라는 말을 쓰기로 한다면, 경제발전, 정치발전, 사회발전은 사람의 사회를 만드는 필수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이 요소들만으로는 좋은 사회, 사람의 사회를 만들지 못합니다. 이 중요한 요소들은 또 하나의 다른 핵심적 요소와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또 하나의 핵심 요소가 **문화**이고 **문화발전**입니다. 예를 들어 '번영'의 경우, "무엇을 위한 번영인가"라는 질문이 없다면 경제발전과 물질적 번영은 의미와 목적을 상실합니다. 번영 그 자체만을 목표로 하는 사회는 풍요한 소

비사회, 물질적 부를 중심 가치로 두는 사회, 번영의 수단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의 품위와 생명의 존엄을 생각하는 사회, 인간 발전을 목표로 하는 사람의 사회를 만들지 못합니다. “무엇을 위한 번영인가”라고 묻는 것이 ‘문화’이고 성숙한 ‘문화적 능력’입니다. 문화는 경제발전과 번영의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그 자체는 결코 수단적 가치 아닌 본질적 가치의 차원에, 사회발전의 목표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위한 번영인가라는 질문은 사회가 지키고 지향해야 할 근본적 가치, 사회가 어떤 경우에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본질적 가치를 환기시킵니다. 그 본질적 가치를 망각한 사회가 ‘물가치 사회’입니다. 물가치 사회에서 사람은 수단, 도구, 소비기계에 불과합니다. 물가치 사회는 이처럼 인간의 존엄과 품위를 업신여기고 사람들을 깔아뭉개어 불행하게 하며 심지어 파괴하기까지 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사회’입니다. 물론 인간은 결코 이 지상의 제왕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이 무시되면 다른 모든 생명체의 존엄도 무시됩니다. 인간의 품위와 생명의 존엄을 사회의 중심 가치로, 지향점으로, 발전의 궁극적 목표로 삼을 줄 아는 능력의 원천이 문화입니다. 문화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 (7) 로마제국이 망한 이유가 260 가지라면 문화를 정의하는 방식도 최소한 260 가지는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는 한 생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는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회가, 혹은 민족 집단이나 인류가, 과거에서부터 이룩해온 문화유산과 전통을 중시할 때 문화는 ‘인간이

축적하고 계승해온 물질적 비물질적 유산의 총체'입니다. 인간의 창조적 활동에 주안점을 두면 문화는 인간의 창조행위, 특히 '예술적 과학적 창조 행위와 그 성과'이며, 이 경우 문화적 능력은 예술의 여러 장르와 과학 분야에서 개인들이 발휘하는 창조의 능력이거나 창조의 성과를 향유할 수 있는 개인들의 고급 교양을 의미하게 됩니다. 한 사회집단을 다른 집단들로부터 구별할 수 있게 하는 특징과 정체성에 초점을 두면 문화는 '한 사회집단을 다른 집단으로부터 구별하게 하는 물질적 정신적 활동과 생산물의 총화'이며 그 집단이 살아가는 방식, 곧 '삶의 총체적 방식'입니다. 문화는 또 특정의 가치, 상징, 믿음, 실천의 사회적 전달체계이기도 합니다. 문화가 특정의 방식으로 특정의 가치, 이념, 태도를 가진 사람을 기르고 가르치고 특정의 사회관계를 재생산해서 그 사회관계를 영속화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화는 '사회적 주체와 사회관계를 재생산하는 장치'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 문화의 성격에 대한 규정들도 달라집니다.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모든 시대 모든 공간에서 인간이 반드시 공유하거나 공유해야 하는 보편문화와 보편적 문화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보편주의' 문화론도 있고, 모든 문화는 각각 고유하고 독특하며 서로 등가의 것이기 때문에 그 고유성들 사이에 위계서열을 만들 수 없다고 말하는 '상대주의' 관점도 있습니다. 사회발전, 특히 경제발전에 우호적인 문화나 아니냐에 따라 '발전우호적 문화'와 '발전저항적 문화'를 가르는 발전 결정론적 문화론도 있습니다. 문화를 계급, 인종, 성(gender)의 관점에서 미시적으로 파악하고 연구하는 이른바 '문화연구'의 입장도 있습니다.

(8) 우리 문화헌장의 '전문'(前文)은 문화에 대한 기존의 정의들을 답습하거나 새로운 정의를 시도하기보다는 유용한 통찰들을 고려하되 지금 우리 사회에 왜 문화, 문화적 가치, 문화적 관점이 필요한가라는 시각에서 준비되었습니다. 이 관점에서 문화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힘의 원천"이며 "모든 시민이 자기 삶의 목표와 가치를 실현하는 다양한 활동의 터전"이고 "사회공동체를 묶어주는 공감의 바탕"이자 "창조성의 모태"입니다. 물론 민족의 오랜 삶의 경험과 지혜가 축적된 전통과 유산도 문화입니다. 그러나 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반응하고 변화의 요청과 교섭해서 수정 발전하는 살아있는 실천이자 그 실천의 동력원입니다. 이 관점에서 헌장 전문은 문화를 변화에 대응하고 변화를 만드는 '창조적 동력의 원천'으로 규정했습니다. 여기서 창조적 동력은 반드시 예술과 과학 영역의 창조성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민이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고 발휘하며 그가 추구하고 이룩할 수 있는 창조적 성취의 폭을 넓히고 그 성취로부터 오는 행복의 크기를 최대화하는 모든 의미 있는 문화적 활동의 동력이 '문화적 창조성'입니다. 문화적 창조성은 닫히고 막힌 사회를 싫어합니다. 창조성은 열린사회의 집단적 동력원이기도 합니다.

(9) 헌장 본문 제1조와 제2조는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천명하는 조항들입니다. 문화적 권리 또는 문화권리(cultural rights)는 우리 사회에 아직은 낯설고 생경한 개념입니다. 대다수 시민들은 그들에게 어떤 문화적 권리들이 있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고 있고, 이는

정부 기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문화'라는 요소는 통치와 협치, 경제발전과 사회발전, 국제관계와 사회적 소통관계 등 학계는 물론이고 정치, 경제, 사회의 일반 영역에서 그 중요성이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고 이런 인식 변화에 따라 문화권리의 개념도 세계에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화적 권리'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948년의 유엔 '보편인권선언'에서입니다. '보편인권선언'은 차별철폐와 평등의 관점에서 문화적 권리의 중요성을 언급한 최초의 국제문서입니다. 이어 1966년 유엔 총회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채택합니다. 같은 해 유네스코(UNESCO) 총회는 '국제 문화협력에 관한 원칙 선언'을 채택하면서 '문화권리'를 언급했는데, 이 때 이후 문화적 권리의 개념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각종 회의, 선언, 협약을 통해 각국에 문화권의 보장과 실천을 권고해온 것은 유네스코입니다. 특히 '문화와 발전에 관한 유네스코 세계위원회' 보고서인 '세계의 문화다양성'(1995)은 학계(주로 법학, 사회과학) 전문가들이 동원되어 문화권(文化權)에 대한 세계 각국의 인식도와 실천 정도를 연구하고 의견을 낸 본격적 보고서입니다. 문화적 권리에 대한 유네스코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골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권으로서의 문화권리'(cultural rights as human rights)라는 입장이고 또 하나는 '서로 다른 문화들 사이의 상호존중에 필요한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권리로서의 문화권리'라는 입장입니다. 앞의 것이 주로 개인의 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를 의미한다면 뒤의 것은 국제법, 국제정치, 세계화, 문화시장 등의 문맥에서 제기되는 집단적 문화권의 필요성이라는 생각을 요약합니다.

- (10) 우리 헌장은 문화적 권리를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자 **‘평등한 권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엔과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가 지난 40년 동안 제기하고 발전시켜온 문화권 개념의 논의 전통을 대체로 따른 것입니다. 문화적 권리는 개인 인권이라는 보편적 문맥과 테두리 속에 위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권’입니다. 문화적 권리는 또한 거의 모든 근대 헌법들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자유권(사상, 표현, 믿음, 결사, 집회의 자유)과 불가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시민의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문화적 권리가 이런 기본권의 테두리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권의 문화적 성격, 다시 말해 기본권이 동시에 시민의 문화적 권리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드러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헌장 제1조 기본권 조항은 시민이 **“부당한 검열, 감시, 위협에 시달리지 않을 권리”**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고 말합니다. 이런 선언은 문화권이 기본권이라고 말하는 것 이상의 구체적이고 절실한 문화적 의미를 갖습니다. 광복 이후 수십 년 우리 사회의 문화적 창조력을 옥죄고 고갈시킨 것은 검열, 감시, 위협이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적극적 제한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의 문화적 창조 역량이 문학, 미술, 음악 같은 기초 예술 분야들은 물론 영화, 만화, 음반 등 대중문화의 영역에서 폭발적으로 발휘될 수 있었던 것은 검열, 감시, 위협의 가위질과 칼질과 몽둥이질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위질, 칼질, 몽둥이질은 유령처럼 언제든지 부활할 수 있고 악몽처럼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민의 문화적 권리에 주목하지 않는다면

기본권이나 자유권의 내용은 공허해지고 그 실질 내용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상, 표현, 믿음은 철저하게 ‘문화적’ 사항들입니다. 더구나 헌장 제1조는 “이 땅 어디에서나 품위 있는 삶을 누릴 권리”를 시민의 문화적 권리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품위 있는 삶의 권리’는 시민의 정치적 권리,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를 오히려 문화적 권리의 테두리 안에 통합해 들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헌장이 천명하는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은 자유권의 테두리 안에 있지만 한 것이 아니라 그 테두리를 넘어가는 훨씬 넓은 의미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헌장은 문화와 인권의 관계를 넓고 유용한 방식으로 연결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설명들을 뛰어넘어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문화적 권리가 존중되고 보호받고 그 권리가 실천적으로 보장받는 것이 사람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사회의 기본이자 토대라는 인식입니다.

- (11) “창조, 참여, 향유의 평등한 권리”라고 요약된 헌장 제2조, 평등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 조항도 대체로는 유엔 보편인권선언이나 앞서 언급된 1966년 유엔 총회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천명된 문화적 권리 개념을 따르고 있습니다. 유엔 규약 제13조는 인성의 완전한 발전과 인간 존엄의 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선언하고, 제15조는 모든 사람이 “문화적 삶에 참여할 권리, 과학 발전과 그 응용의 혜택을 누릴 권리, 자신의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생산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장 제2

조는 문화적 삶에 ‘참여’할 권리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어떤 차별이나 배척도 받음이 없이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선언합니다. 이 문화적 평등권의 개념 안에는 말할 것도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 평생교육을 추구할 권리, 정보지식에 접근할 평등한 권리, 각자 자유로운 표현수단을 가질 권리, 그리고 **“시민의 문화적 삶에 영향을 주는 공공정책의 결정과 그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 문화정책의 결정과 그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라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의 정치적 문맥에서 볼 때 그 중요성이 아주 큰 것입니다. 통틀어 제2조의 기본 취지도 시민의 평등한 문화권 행사와 그 보장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의 행복을 극대화하여 사람의 사회를 만드는 작업의 기초가 된다는 인식입니다.

- (12) 헌장 제1조와 제2조가 시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문화적 권리를 선언하고 있다면 제3조 **“공동체의 문화적 토대”** 조항은 각기 다른 가치와 목표를 가진 사회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를 일구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지난한 문제에 대한 문화적 응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나 국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오늘 날 문화는 무작정 ‘좋은 것’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 분열, 배척, 반목, 갈등, 전쟁, 살육의 원인이 되거나 사단이 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문화 때문에 망하는 사회도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문화는 불행히도 많은 경우 ‘배제와 배척’의 장치입니다. 이런 현실은 국제 관계 아닌 국내 환경에서

도 심각한 문제들을 제기합니다. 갈등의 사회적 중요성을 백번 인정한다 해도 갈등과 반목 때문에 공동체가 풍비박산 나고 사분오열 되어 침몰의 위기로 몰린다면 갈등과 모순의 창조적인 사회적 의미는 사라집니다. 문화 그 자체가 문제일 때 그 문제에 대한 해답도 문화로부터 나올 수 있는가? 문화가 문화를 구원할 수 있는가? 현장제정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권위적인 '사회통합적' 관점의 해답도 내놓을 입장이 아닙니다. 위원회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이 문제를 문제로서 인식하고 '문화현장'에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제안을 담아내어 사회구성원들의 최대 동의를 구하는 일 뿐입니다. 그 최선의 제안은 공동체를 묶어줄 공감의 바탕, 시민의 상호 신뢰와 협력과 유대의 기초, 시민적 덕목의 원천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내어 제시하는 일입니다. 현장은 우리 사회가 이익사회 이상의 공동체적 결속과 유대가 가능한 '공동체사회'로 유지될 수 있게 할 토대로서 **기본적인 문화적 가치들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기본적 문화적 가치들은 현장 제3조에 천명된 것처럼 **사람과 생명의 존중**이라는 가치, **평화애호**라는 가치, **이웃에 대한 배려와 선의, 공정성과 관용, 자연과의 상생**이라는 가치입니다. 또 현장은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시민적 덕목의 원천으로 **아름답고 선한 것의 존중, 공적 가치의 옹호, 역사적 기억과 경험의 공유, 옳고 그름에 대한 이성적 판단**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개인적 가치와 목표에도 불구하고 사회 파탄을 막는 데는 사회구성원들이 동의하는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문화적 가치들이 있다는 사실이 주목되고, 그런 가치들을 사회적으로 부단히 확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도 현장 제

3조의 취지는 기본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는 인식입니다. 그런 사회는 최소한 망하지 않습니다. 이익사회와 공동체 사이의 긴장으로부터 창조적 에너지를 얻어 공동체사회 또는 사회공동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 부분에서 지금 큰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가치를 논하는 '공청회'라는 것이 아예 불가능할 정도로 공적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이성의 공적 사회적 사용이라는 것이 우스개 감으로 전락한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 (13) 이번 헌장은 시민의 권리는 열심히 천명하면서도 시민의 의무나 책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그간의 국가헌장들에 대한 시민들의 쓸쓸한 기억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민주사회의 시민이 해야 할 일, 수호해야 할 가치, 행위 규범의 모색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라고 되어 있는 것을 뒤집으면 '책임'이 됩니다. 헌장은 그러나 그런 시민의 책임을 시민의 의무로 규정하지 않고 자발적 실행을 요청하는 '약속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에 설명된 헌장 제3조도 그런 시민적 동의와 실행의 약속을 은연 중 요청하고 있습니다.
- (14) 이제 이 설명 발제도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헌장의 골격, 핵심 취지, 주요 개념 설정의 배경 논리, 문제의식 등이 웬만큼 설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헌장은 마지막 조항까지 설명되어야 합니다만, 대부분의 조항들이 우리 문맥에서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는 내용과 모종의 자명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조항

들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세하고 장황한 설명은 필요하지는 않다고 여겨집니다. 필요한 설명은 토론에서 다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끝내기 전에 두어 가지 사항만은 언급해야 합니다. 제4조의 '문화다양성의 원칙'과 제12조의 '국가의 책무' 조항입니다. 그리고 제9조 '민주주의의 문화적 토대' 조항도 가능하면 설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 헌장 조문 전체에 대한 취지와 내용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여기서 그럴 수 없는 것이 유감입니다.

- (15) “문화다양성”(cultural diversity)의 개념은 유네스코가 오랜 동안 공들여 키워온 ‘유네스코의 딸’입니다. 우리 헌장이 ‘문화다양성의 원칙’을 조문으로 구성한 것은 꼭 유네스코의 관심사에 동조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원칙의 현대적 필요성과 적실성 때문입니다. 지금은 세계 어느 나라도, 어떤 개인이나 집단도, 혼자 동떨어져 살 수 없는 시대, 열림과 섞임과 스밈의 시대입니다. 다중성, 혼종성, 혼합성은 개인들의 문화적 정체성은 물론이고 현대의 모든 국가, 민족, 집단의 문화 상황을 규정하는 특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호 열림과 섞임은 시장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세계 각지의 소수 문화, 특히 정치적 경제적 열세에 놓인 토착 고유문화들과 자생적이고 자주적인 국지 문화 활동들을 소멸의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다양성의 문제를 중시해 온 것은 첫째, 인류 창조성의 산물인 다양한 문화들을 소멸의 위기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관심, 그리고 둘째, 다양성의 존중이 세계 평화와 공존의 토대이며 토착-자생 문화집단의 양도할 수 없는 기본 권리이자 자유라는 입장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

로, 문화다양성은 평화의 조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정치적 갈등과 쟁투의 사단이 되기도 합니다. 교육, 종교, 언어, 문화정책 등 문화적 쟁점들을 둘러싼 이념 갈등으로서의 '문화전쟁'은 국제적으로나 국지적으로 오늘 날 세계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다양성의 억압 역시 긴장, 갈등, 저항을 불러옵니다. 우리 헌장의 다양성 조항은 이런 사정들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문화다양성이 지니는 창조적 가치, 표현의 자유 실현, 평화와 공존의 전망, 정체성의 요구에 대한 응답력, 닫힌 사회에 대한 저항 같은 것이 우리 사회에도 아주 중요한 문화적 자원이라는 판단 위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 (16) 헌장이 강조하고 있는 시민의 문화적 권리,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중요성, 사회발전의 동력이자 토대로서의 문화라는 원칙들은 그런 권리, 가치, 원칙들을 현실에 옮겨놓을 실행의 약속 없이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구나 헌장은 법률이 아니므로 강한 구속력을 갖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민사회가 애써 문화헌장을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와 정신을 정책, 법률, 제도 속에 담아내고 실행의 방도들을 강구하는 절차가 없다면 헌장 제정 작업은 공연한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헌장 제12조가 “국가의 책무” 조항을 설정한 것은 그래서입니다.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그 실현과 실천을 보장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들을 포함한 국가의 책무입니다. 사회발전의 문화적 토대와 원칙들을 정책, 제도, 법률 속에 담아내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성취와 행복의 기회를 확장해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시민

의 문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문화정책의 입안과 실행에 시민을 참여시키며, 시민의 일상적 삶을 개선하기 위한 모든 종류의 문화 관련 사업들을 추진할 때에는 시민사회의 창의적 제안들을 환영하고 시민사회 민간단체들과의 적극적인 제휴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이런 책무의 이행으로 국가가 손해 볼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그 책무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소홀히 할 때 그 첫 번째 희생자는 시민이며, 시민의 손해를 강요하는 국가는 이미 국민의 국가, 시민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현상이 정부와 시민의 공동 노력으로, 민관합작으로, 국가와 시민사회의 공동 약속으로 만들어지고 공표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거기에 있습니다. (*)

문화현장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몇 가지 제안

지 금 중
문화현장제정위원회 위원

목차

-
1. 들어가며

 2. 문화발전위원회(가칭)의 위상과 역할

 3. 문화현장 구현을 위한 실행계획

 4. 나가며

1. 들어가며

짧지 않은 준비과정을 거쳐 마련된 문화헌장이 세상에 선보일 차비를 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유네스코 문화다양성선언 등 국제적 차원의 문화담론과 시민사회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문화헌장 등이 나름의 문화적 의미들을 담아 가치를 공유된 바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자율성 아래 폭넓은 논의과정과 민주적 절차를 거쳐 마련된 문화헌장이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욱이 이 과정을 국가부처인 문화관광부가 주관자가 아닌 협력자로서 함께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해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경제발전과 정치발전만이 아니라 문화발전이 중요하고, 또 경제와 정치발전을 위해서라도 문화발전이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문제의식에 대해 정부의 문화정책 담당 부처인 문화관광부가 공감하고 수용한 것이다. 이는 문화헌장이 과거 국민교육헌장 등의 경우처럼 국가의 필요에 따라 생산된 일종의 통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시민사회와 시장, 국가가 함께 추구할 자율적 가치의 준거로서 기능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 문화예술계, 학계 등 민간의 대표성을 갖는 인사들로 제정위원을 구성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정 과정 또한 상향식 참여형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문화헌장 제정 과정만큼은 시민사회와 문화관광부 사이의 훌륭한 민관협력(Governance)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문화헌장 제정 움직임은 거대한 문명의 전환이라는 객관적 정세의 변화와 이에 상응한 주체의 의지가 작용해서 일어나고 있는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947년 유엔에서 제정된 세계인권선언 22조에서 사회 구성원의 존엄과 개성의 자유로운 표현에 없어서는 안 되

는 권리로 '문화적 권리'가 언급되고, 이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1966년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규약 A)이 제정되면서 문화적 권리가 국제적 수준에서 좀 더 명시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했는데 한국은 90년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국제규약'에 가입한 바 있다. 이는 인권의 지평이 점차 넓어지는 과정에서 문화적 권리가 중요한 인권의 문제로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경제성장을 기축으로 하는 '발전'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전세계적 자각이 생기며 발전 개념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1997년에 유네스코의 문화와 발전 세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Culture and Development)가 내놓은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Our Creative Diversity)이라는 보고서는 “발전이란 가치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자유를 향상시키는 과정”이며, 발전에는 문화적 관점이 필요한데 문화적 관점은 “인간발전”(human development)의 관점으로서 “이 인간 발전의 시각(좁은 의미의 경제 발전과 대조되는)은 경제적 사회적 진보를 문화적 조건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견해를 제출한 바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산업패러다임의 전환 과정에서 문화가 신산업의 동력으로 등장한 점, 냉전의 종식 등도 문화의 중요성, 위상과 역할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가져 왔다. 내부적으로는, 노무현정부가 들어서며 참여, 자율, 분권이 국정 기조로 등장 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정책을 다원화하는 차원에서 문화권에 대한 NAP(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창동장관 시절에 창의한국, 새예술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문화현장의 필요성을 정책으로 수용되기도 했다. 이러한 객관적 정세변화 속에서 문화민주주의, 문화적 권리 실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문화운동 진영의 주체적 의지가 문화현장 제정 움직임

임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시민사회와 국가, 시장이 각각 문화헌장이 담고 있는 가치를 수용하고, 그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야 문화헌장이 사문화되지 않을 수 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문화헌장에 담긴 이념과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넓히는 것이다. 헌장이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어렵다. 따라서 문화헌장의 내용을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홍보하고,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야 한다. 또 문화운동 주체는 물론이거니와 여성, 환경, 복지 등 각 사회운동 부문을 비롯한 지역, 세대, 계층별 토론회를 개최해 문화헌장이 담고 있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실행계획에 따라 각 분야의 비문화적 요소들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여나가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시민사회, 국가, 시장 등 나인 메이저 그룹별로 의제 작성을 하고 실천전략을 수립한 ‘의제21’의 실행방법을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말해 분야별로 의제작성을 하고, 실행과 평가 및 환류과정을 갖는 것이다.

다음 과제로는 법과 제도, 정책과 사업이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는 것이다. 물론 이는 앞의 과제를 실현하는 과정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앞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다. 여기에는 문화기본법 제정과 문화발전위원회(가칭) 구성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차원의 문화발전은 반문화적 관습과 생활문화, 의식과 태도 등 비물질적인 것을 비롯해 공간환경, 도시계획 등 물질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고, 교육, 환경, 복지 등 다양한 사회 영역과의 연관성을 고려해야만 가능한 일이어서 좁은 의미의 문화정책 범주를 넘어서는 과제

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기능분담 체계에 따라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관광부가 가지는 권한과 책임으로는 문화적 차원의 사회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 수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여러 부처의 문화발전 관련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문화발전위원회' 같은 국가기구가 필요한 것이다. 다만 지속가능위원회 등 여타 대통령직속자문위원회들이나 문화관광부 등 정부부처와의 기능의 중첩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할과 기능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2. 문화발전위원회(가칭)의 위상과 역할

문화발전위원회는 대통령직속위원회로서의 위상을 가지며,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으로 지역 단위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발의로 2006년 상반기에 입법 예정인 '지역문화진흥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역 단위의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는 문화기본법 제정을 통해 법적 위상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 대통령 '자문기구'가 가지는 위상의 제도적 한계를 넘어서는 위상과 역할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즉 지속가능위원회가 정부의 각종 개발계획 등에 관해 사전검토나 조정 등의 기능밖에 못하고, 집행과정이나 사후조정 기능을 할 수 없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해 무력한 기구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구성원칙 등을 규정한 법이 마련되어 안정적인 존립기반을 만들어야 하는데 '문화기본법'이 바로 그 그릇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의 골간을 이룰 핵심적 내용인 목적, 기능, 구성원칙 등을 구상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목적은 '국가의 문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정책 수립과 심의를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문화발전위원회를 둔다'는 정도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는데 위원회를 대통령 자문기구로 할 것이냐 아니면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독립적 국가기구로 할 것이냐 하는 위원회의 위상과 관련한 부분이다. 어느 것을 선택하든 간에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문기구로 만들 경우는 앞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제도적 한계를 안게 된다. 즉 대통령이 열의가 없을 경우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할 개연성이 항존한다. 하지만 문화발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경우는 정부 정책 전반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대로 국가인권위원회처럼 헌법기관에 준하는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만들 경우엔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 등 삼권이 각각 위원을 추천하는 등 조직 구성에서부터 상대적인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업무수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부 정책에 효율적인 연계와 협력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군다나 문화발전이라는 과제의 특성이 정부 각 부처의 행정 간의 연계,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등이 필요한 것이라고 할 때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문화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하에 두되 '문화기본법' 제정을 통해 그 위상과 역할에 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기본법은 변화하는 문화환경에 대한 문화정책적 대응의 필요성과 문화권 등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강력한 정책수단의 마련, 문예진흥법을 비롯한 약 20여 개의 문화 관련 법의 효율적인 법체계의 재구성 등 다양한 필요에 의해 제기되어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지

난해에 기초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문화기본법 제정 논의의 촉발은 문화가 정치, 경제 등의 수단적 개념이나 가치가 아닌 사회발전의 목적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며, 이러한 가치의 확산을 법제화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이같은 관점에서 볼 때 문화국가 이념과 문화권, 광의의 문화개념 규정 및 문화영향평가제도 등과 함께 문화발전위원회 구성이 문화기본법에 포함되는 것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원회 설치에 관한 논의는 문화기본법 제정 논의와 궤를 함께 해야 할 것이며, 문화 관련한 전체적인 법체계와 정책시스템 정비를 감안해 추진해야 한다.

다음으로 검토할 것은 위원회의 기능이다. 먼저 밝혀 둘 것은 기능에 관한 논의는 향후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보다 세밀하게 구체화시켜야 할 것이라는 전제이다. 문화관광부를 비롯한 각 정부부처나 여타 자문기구의 고유 업무와 중첩되지 않으면서도 의미 있는 역할을 추출해 문화발전위원회의 기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략적으로 ▲문화적 관점의 사회발전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주요정책방향의 설정 및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문화권 확대, 문화다양성 증진 대책 등 주요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에서 채택된 문화다양성선언, 문화다양성협약 등 국제적 문화규범의 국내이행대책 및 대응전략에 관한 사항 ▲문화공공성 확대와 대중의 문화접근권 확대에 관한 사항 ▲‘문화발전보고서’ 발간 및 문화적 현황 개선에 관한 사항 ▲대중의 문화적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문화적인 국가발전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등이 위원회의 기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넓은 의미의 문화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기능, 조사 및 연구기능, 교육 및 홍보기능, 국내·외 협력기능 등을 수행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구성 원칙으로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가 구현되고 각 지역의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성을 고려한 상향식 참여형 의사결정구조가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 사회의 문화적 관습과 생활문화, 도시계획과 공간환경 등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문화를 의제로 상정할 수 있는 거시적 관점이 적용되어야 하며, 문화적 관점의 사회발전 정책이 정부정책 등에 반영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원회 구성은 광역 단위의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대통령이 위촉하는 약간명의 인사, 시민사회단체와 문화예술단체, 학계 등에서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하는 약간명의 인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위원회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인사를 위원장이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해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반적 대통령 자문기구의 조직을 준용해 대략적인 조직도를 구상해보면,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 조정하기 위해 하부조직으로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필요에 따라 사안별 특별위원회를 두거나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회 구성, 자문위원회 등을 둘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고 위원회·운영위원회·특별위원회·전문위원회 등의 회의준비와 안건 작성,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 위원회와 관련한 업무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문화발전에 관한 과제의 발굴과 실행, 업무추진상황의 관리 및 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문화발전팀을 두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와 반대로 관계행정기관소속공무원 및 관계기관·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거나 자료제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문화발전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주요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는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제도화해야 위원회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3. 문화헌장 구현을 위한 실행계획

문화헌장 구현을 위한 실행계획(초안)⁷⁾

정부는 문화헌장을 널리 알리고 아래의 실행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공공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시장부문의 협력이 뒤따라야 한다.

1. 문화가 인간발전, 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문화와 발전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를 활성화 해야 한다. 문화와 복지, 문화와 환경, 문화와 교육, 문화와 도시, 문화와 경제, 문화와 정치 등 다양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
2. 공공정책은 인권의 핵심 요소의 하나인 문화권(cultural rights)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돕고, 문화권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함과 동

7) 이 실행계획은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선언의 실행계획을 준용해서 우리 현실에 맞도록 재구성한 것이다.

시에 대중의 구체적 삶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에 따라 문화권의 목록을 작성하고, 현실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헌법에 문화권이 반영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기본법을 제정해 근간으로 삼아 문화예술진흥법과 현재 입법 진행 중인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등 문화 관련 법들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3. 문화에 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공교육 교과 과정에 문화적 의미를 갖는 다양한 시민교육과 문화교육을 포함시켜 그 질과 양 모두가 적절한 규모가 될 때까지 확대해야 한다. 더불어 공영방송의 편성에서 문화 관련 프로그램의 비중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4. 문화헌장제정위원회는 해마다 '문화발전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팀(문화발전위원회)을 후원하도록 정부에 권고한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문화 현황을 알려주는 지표가 될 것이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자들과 다양한 이익집단들에게 전달될 것이다.

이 보고서에 담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문화와 발전에 대한 최신 동향을 조사함.
- (나) 국내외 문화적 사건들을 감시함.
- (다) 양적인 문화지표를 만들어 출판함.
- (라) 국내에서 벌어지는 악습과 잘못된 행위, 문화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치는 정책을 드러내고, 좋은 관습과 정책을 소개함.

- (마) 사회적으로 중요한 특별 주제들에 대한 분석과 정책 제안을 제시함. 특별 주제는 생명과 환경 등 지구윤리, 문화적·민속적 폭력, 새로운 문화적 표현양식, 예술과 문화생활, 문화와 경제, 성평등의 인식 발전, 미디어 기술에의 접근, 지역균형발전과 문화, 발전 정책에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적용,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 이주노동자와 문화다양성, 언어정책, 통일정책에서의 문화정책의 의미 등 사회적인 의미를 갖는 넓은 의미의 문화 주제를 포함함.

5. 급격한 도시화, 도시 형성 과정에서의 과도한 이윤추구로 인한 공공성 저하, 과도한 에너지 사용 등은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동시에 인간안보를 위협하며, 우리 사회를 위험사회로 몰아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재해의 문화적 차원에 대한 인식의 확장과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여 우리 사회의 구조적이고 반문화적인 삶을 개선하고 인위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6. 문화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 하고,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인식제고, 협력의 방법, 기본원칙, 기준실행 등에 관련된 개념의 정의를 보완해야 한다. 또한 유네스코에서 채택된 바 있는 문화다양성 협약 인준에 적극 나서야 하며, 성적 소수자, 이주노동자, 장애인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개인과 집단을 포용하고 이들의 사회참여를 강화해야 한다.
7. 한국어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지원해야 하며, 한국어를 보다 풍부

하고 다양하게 하기 위해 각 지역의 토착언어를 장려해야 한다. 또한 사회구성원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공공서비스를 통해 유년기부터 쉽게 여러 언어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8. 여성에 대한 폭력문화의 종식, 기본적인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고하고, 문화, 정치, 경제 영역에서의 여성의 참여 전략을 강화 하기 위해 성인지 발전계획(Gender-aware development planing)을 구체화 하기 위한 수단을 개발해야 한다.
9. 정당하지 못한 근거로 규제와 검열이 횡행함으로써 제한받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대폭 신장해야 한다. 한편 자율적 통제를 벗어난 미디어의 근거 없는 폭력과 성적 착취로 인한 인간적 타락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시청자 보호, 특히 청소년 보호는 늘 상충하는 가치처럼 여겨지고 있다. 미디어에서의 폭력과 포르노 문제를 둘러싼 미디어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의 토론과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10.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변화하는 공유저작권 개념을 확장하고, 보장된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11. 창의성의 개발 및 창의적 작업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저작권과 기타 관련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세계인권선언 제27조에 의거한 문화에 접근할 공공의 권리를 옹호해야 한다.

12. 새로운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을 장려함으로써 디지털 문해를 추구하고, 사이버공간에서 자생적 문화상품의 보급과 전세계의 교육, 문화, 과학 정보에의 접근성을 보장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13. 공영 방송이 다양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효율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14. 구전 및 유·무형 문화유산의 보존과 확대를 위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불법 유통을 방지해야 한다.
15. 전통지식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현대과학과 지역지식 사이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
16. 우리나라의 문화발전은 지역문화의 발전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7. 전세계적으로 국가 내에서 '인민의 최고위성'(Supremacy of the People)이 회복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발전에 관련한 공공정책 수립에 있어 시민사회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과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상기 실행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 정부, 시민사회, 시장 등 사회 각 영역과 계층, 세대, 지역 등 각 부문을 고려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은 향후 우리의 과제이다.

문화헌장제정위원회는 문화관광부의 정책수립과 실행시 상기 실행계획에 설정된 목적들을 고려할 것과 문화발전을 위한 시너지 효과의 확대를 위해 다른 정부 부처나 비정부 부문과 협력할 것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권고한다. 나아가 대통령직속의 '문화발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문화적 관점의 국가 발전을 도모할 것을 대통령에게 권고한다. 문화발전위원회는 넓은 의미의 문화발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산하의 다양한 기구들과 중첩되지 않는 선에서 네트워크 방식을 통해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문화발전을 꾀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4. 나가며

문화헌장 구현을 위한 실행계획은 문화헌장이 담고 있는 문화적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해 일정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한 후 그것의 달성을 구체화시키는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을 거쳐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문화헌장의 정신과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과 사회적 합의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실효성 있는 실행계획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영역과 각 주체들이 문화헌장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 공유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며, 목표 실현에 적합한 수단을 찾아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

이 아닐 수 없다. 그래야만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가 발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이 가능하려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 단위가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추진 단위는 문화헌장제정위원회의 성과를 이어받아 '문화헌장실천추진위원회' 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문화기본법 제정과 연계해서 '문화헌장실천과 문화기본법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 정도로 명명을 하면 어떨까 싶다. 위원회 구성은 문화예술계 인사를 비롯해 각 분야의 학계 인사, 시민사회단체 인사, 세대와 계급을 대표하는 인사 및 사회적 소수자, 문화관광부 정책담당자 등을 망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 위원들을 근간으로 해서 영역별, 주체별 부문 조직을 구성해 토론회, 공청회 등 담론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또 각 정부 부처에 문화헌장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향후 정책적 연계와 협력을 끌어내는 것도 위원회의 과제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실행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추진력을 받을 것이다.

MEMO

MEMO



MEMO